

의안번호	2204960
의 퇴 인	안도걸 의원
회 답 일	2024.11.11.
추 계 번호	24F4585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,
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법인세 중간예납 산출방식 단일화 등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,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산출방식 단일화 등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, 법인세수는 2025년 1조 4,942억원, 2029년 642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1조 7,510억원(연평균 3,502억원) 증가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(안 제55조)	80	642	642	642	642	2,648	530
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의 중간예납 산출방식 단일화(안 제63조의2 등)	14,862					14,862	14,862
합 계	14,942	642	642	642	642	17,510	3,50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5조(세율)	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을 2~200억원 구간과 통합하고, 세율을 19%로 인상	
2	안 제63조의2(중간예납세액의 계산), 안 제76조의18(연결중간예납)	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법인세 산출방식을 현행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에서 택일하는 방식에서 가결산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변경	
3	안 제21조(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)	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공과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화	
4	안 제24조(기부금의 손금불산입)	의료기술협력단에 기부하는 경우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기부금 대상으로 추가	
5	안 제46조제2항(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)	적격분할 주식배정 요건 위임근거 마련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6	안 제76조의22(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)	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,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이고 연결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,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이고 연결법인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면 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	
7	안 제120조의4(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), 안 제124조(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)	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에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 및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업자를 포함하고,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· 징수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5조(세율)	○	
2	안 제63조의2(중간예납세액의 계산), 안 제76조의18(연결중간예납)	○	
3	안 제21조(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)	×	추계 곤란
4	안 제24조(기부금의 손금불산입)	×	추계 곤란
5	안 제46조제2항(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)	×	추계 곤란
6	안 제76조의22(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)	×	추계 곤란
7	안 제120조의4(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) 안 제124조(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)	×	추계 곤란

2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 추계 내역

가.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55조)

-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한하여 과표구간 2억원 이하의 세율 인상
- (현행) 9% → (개정안) 19%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중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소규모 법인과 그 외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의 과세표준 분포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전체의 2023년 과세자료와 동일하다고 가정
-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2023년 과세자료에서 1법인당 과세표준을 구한 후, 현행 및 개정안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수를 곱해 세수효과 산출
 -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수는 통계청 「기업통계등록부」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 수를 제외하여 산출
 - 법인의 가결산 방식을 통한 중간예납 산출 비중을 반영하여 2025년 세수효과 추계

□ 추계결과

- 2025년 80억원,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누적 2,648억원 증가

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55조	80	642	642	642	642	2,648

나. 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의 중간예납 산출방식 단일화

□ 재정수반요인 (안 제63조의2 및 제76조의18)

-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산출방식을 가결산 기준으로 단일화
 - 현행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선택하여 산출하는데,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한해 산출방식을 가결산 기준으로 단일화

□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-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 비중을 이용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3년 신고 기준 법인세 추계
- 2025년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세액은 2025년 법인세 신고분 전망치에 최근 10년간 연평균 신고분 대비 중간예납세액 비중을 반영하여 추정
- 개정안의 중간예납세액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세액 추정치에 2025년 유가증권 상장기업 영업이익 증가율 컨센서스를 반영하여 추정
- 2025년 이후 중간예납세액의 세수 증감효과는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정산분과 상쇄된다고 가정

□ 추계결과

- 2025년 1조 4,862억원 증가

공시대상기업집단 중간예납 계산방법 단일화에 따른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
안 제63조의2 등	14,862	-	-	-	-	14,862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